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2021. 8.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 배경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는 그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우리지청의 방침을 아래와 같이 수립 시행하고자 함

□ 수립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 내 용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에서 자체 운영방침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8개항을 포함

시행령 제25조 규정사항	우리지청 방침 내용
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제4조 설치근거 및 목적
제2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제5조 설치현황
제3항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사람	제6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제4항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제7조 촬영시간, 처리방법 등
제5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제8조 영상정보 확인방법 등
제6항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제9조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제7항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조치	제10조 기술적·관리적 조치 제11조 물리적 조치
제8항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정 2012. 4. 30.
개정 2015. 6. 8.
개정 2016. 5. 31.
개정 2017. 9. 20.
개정 2018. 3. 20.
개정 2019. 1. 22.
개정 2019. 3. 13.
개정 2019. 6. 11.
개정 2019. 8. 20.
개정 2020. 3. 13.
개정 2021. 7. 12.
개정 2021. 8. 9.

제1장 총 칙

제1조(방침목적) 이 방침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및 서울동부고용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관리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및 서울동부고용센터의 청사 내·외부 등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②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한다.

제5조(설치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모니터는 녹화장치가 있는 관리실에 설치 운영하며, 개별 카메라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설 치	위 치	촬영 범위
56대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3층(21대)	중앙 및 비상출입구(3대)
		비상출입구 상담창구(1대)
		창구 및 대기공간(17대)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4층(12대)	중앙 및 비상출입구(2대)
		실업인정 창구 및 대기공간(6대)
		수급자격 창구 및 대기공간(2대)
		고객지원실 창구, 사무공간(2대)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5층(4대)	중앙 및 비상출입구(1대)
		취업지원팀 사무 공간, 출입로(2대)
		CAP실·성취실 앞 복도(1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10층(8대)	근로개선지도1과 사무공간(2대)
		근로개선지도2과 사무공간(3대)
		근로개선지도3과 사무공간(1대)
		복도(1대)
		중앙출입문(1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11층(3대)	복도(1대)
		중앙 출입문(1대)
		산재예방지도과 사무공간(1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17층(5대)	직업능력개발팀 사무공간(3대)
		기업지원팀 사무공간(2대)
	지역협력과 별관(3대)	지역협력과 사무공간(3대)

제6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는 고용관리과장으로 하고, 관리담당자(접근권한자)는 서무담당자로 한다.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관리책임자	고용관리과	과장	김현정	02-2142-8998
관리담당자	고용관리과	주무관	박영우	02-2142-8807

제7조(촬영시간, 처리방법 등)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30일	11층 고용관리과
	※ 보관기간 경과 후 삭제(수동)	지역협력과 별관

제3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에 대한 조치

제8조(영상정보 확인방법 등) 영상정보 확인을 원하는 자는 관리담당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와 신분확인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 할 수 있다.

제9조(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확인 또는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관리담당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표준지침 제44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한다.

<개인정보보호표준지침 제4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 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장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제10조(기술적·관리적 조치) 영상정보에 대한 임의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장 30조(비밀번호 관리)를 준용하여 접근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제11조(물리적 조치) 출입구 시건이 가능한 통제구역에 영상정보 녹화장치를 설치하여 무단접근을 차단한다.

제5장 그 밖에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기타) 이 운영방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기타 개별법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방침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8월 9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청구서				처리기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 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 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센터 1층 정문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 제공 근거	이용·제 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